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62호로 2024년 5월 31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 수립(안 제4조)

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4. ~ 6.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구 소유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제1항에제4호를 신설하여 활성화계획 수립 시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 운영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구 소유의 공유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2019년 전국적으로 약 9만 대에서 2023년 54만 대로 전기차 보급이 약 6배 이상 증가하게 됨.



- 또한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사건도 2021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발생이 운행 중뿐만 아니라 주차·충전 중에도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사전적인 화재대비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전기차 화재발생 발생 시점				
구분	계	2021	2022	2023
계	139	24	43	72
운행중	68	12	22	34
주차중	36	6	9	21
충전중	26	4	9	13
정차중	5	1	1	3
주차중 (다른 화재로부터 연소 확대)	2	1	1	0
충전중 (다른 화재로부터 연소 확대)	1	0	1	0
건인중	1	0	0	1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방안과 우리 구 소유 공영

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2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5(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생략)